[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6.6.22.>

경 고 장

소 속	화서면행정복지센터
직 위 (급)	화서면장
성 명	장 재 용
위반 및 처분내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 제55조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조의2 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므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화서면장은 2022년 소울푸드 페스티벌 축제 시상식에서 수상에 대한 불만으로 물의를 발생하여 언론에 보도되고 민원을 야기하게 된 사실이 있다.

이에, 「상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기관장 경고』처분하오니,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일

상 주 시 장 